

工業所有權 相談解説

商標와 서어비스標 및

周知商標와 著名商標의 差異

問 ① 商標와 서어비스標의 差異는 무엇
입니까?

② 商標에 있어서 周知商標와 著名商標의 差
異는 무엇입니까?

答 ① 商標는 自他的 商品을 識別하기 위한
標識인데 비하여 서어비스標는 他人의 서어
비스業과 區別시키기 위해 使用하는 標識으
로서 兩者의 差異는 使用되는 對象이 商品이나 아
니면 서어비스나에 依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商標나 서어비스標를 같은 商標法에
規定하고 있는바, 그 差異點에 關하여 다시 살펴보
면,

첫째, 商標와 서어비스標의 效力範圍는 그 對象이
商標는 指定商品인데 비하여 서어비스標는 指定서어
비스(用役)라는 것이나, 特許廳에 登錄한 날로부터
獨占排他的인 權利가 發生됨은 同一하고 他人이 任
意로 使用하는 때에는 民事上 및 刑事上의 制裁를
加할 수 있음은 같습니다.

둘째, 對象의 範圍面에서 보면 商標는 商品의 製
造, 加工이나 販賣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나 서어비
스標는 第3次産業에 屬하는 서어비스에 關한 營業을
對象으로 하는 것으로서 現行 商標法은 商品에 대하
여는 53個의 商品區分을 定하고 있으며, 서어비스는
12個의 區分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셋째, 商標와 서어비스標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保護對象의 範圍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兩者에
있어 비록 같은 標章이라 할지라도 聯合성이 認定되
지 아니하고 또한 商標를 서어비스標로, 서어비스標
를 商標로 相互 變更하는 變更出願을 許容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周知著名한 商標라 함은 特定人的 營業에 있어
그 商品에 使用한 結果 一般商人이나 消費者間에 널
리 認識되어 있는 商標를 말합니다.

商標는 本來 自他的 商品을 識別하기 위하여 標識
하는 것으로서 繼續 使用함에 따라 그 識別力이 強
化되고 이로써 그 商標使用者의 信用을 蓄積하게 되
며, 그 商標가 附着된 商品은 그 品質을 保障하는
機能에까지 이르게 되며 누구나 같은 商品이라도 그
商標가 附着된 商品을 찾게 되고 이를 購賣하게 되
는 것입니다.

이렇게 널리 認識되어진 商標를 全然 關係없는 他
人이 無斷으로 使用한다면 이는 原商標使用者의 信
用을 失墜케 하는 것은 勿論 一般需要者에게도 損害
를 끼치게 될 것이므로 商標法에 의한 登錄與否를
不問하고 周知著名商標를 保護하는 것입니다.

商標法에 의하면 “他人의 商品을 表示하는 것이라
고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의 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
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商標法 第9條 第1項 第9
號)와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念慮가 있는
商標”(商標法 第9條 第1項 第10號)는 本人 以外 他
人이 登錄을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고 이러한 周
知·著名商標는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하여서도 保護
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널리 認識되어진 商標라도 同種
商品分野의 程度에 미치는 경우와 他業種에까지 미
치는 경우가 있을 것인바 一般的으로 前者의 경우를
周知商標라 하고 後者の 경우를 著名商標라고 합니
다. 著名商標의 保護範圍는 周知商標보다 훨씬 넓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金永吉(辨理士·金永吉 國際特許法律事務所長)〉